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·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·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(5급 1명, 6급 1명)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하는 한편,

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촌정책국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- 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4. 8. 30. ~ 9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제3항제4호 중 “지원”을 “지원(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점객업자에 대한 폐업·전업 지원은 제외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행정안전부, 1명(5급 1명)은 식품의약품안전처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, “각각 충원”을 “충원”으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5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개식용종식추진단(존속기한: 2027년 4월 29일)

총계	7
일반직 계	7
4급 이하	7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)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점객업자에 대한 폐업·전업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

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명(5급 1명, 6급 1명)은 식품
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
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.

[별표 4]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41조제1항 관련)

1.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

조직	정원
농촌정책국 1개 정책관등	0명

2.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

조직	정원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	4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2(개식용종식추진단) ① • ② (생 략)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. (생 략) 4. 개사육농장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업계 <u>지원</u> 5. • 6. (생 략) ④ (생 략) ⑤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(5급 1명)은 <u>행정안전부</u> , 1명(5급 1명)은 <u>식품의약품안전처</u> 소속 공무원으로 <u>각각 충원</u> 해야 한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 ⑥ (생 략)	제44조의2(개식용종식추진단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지원(개식용 유통상</u> <u>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</u> <u>대한 폐업 · 전업 지원은 제외</u> <u>한다)</u> 5. • 6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</u> ----- ----- -- <u>충원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. 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7